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37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서천호 · 김선교 · 김민전
최보운 · 박덕흠 · 이만희
임종득 · 백종현 · 조은희
우재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국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고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각에 국기를 게양·강하하고 이때 게양식·강하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급 학교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기 게양식·강하식을 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기 게양·강하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당 절차를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현장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기 게양의 교육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청사”를 “청사, 각급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급 학교 및 군부대”를 “군부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 ② (생 략)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u>청사</u> 등에는 국기를 연 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 여야 한다. 1. ~ 5. (생 략) ④ <u>각급 학교 및 군부대</u> 의 주 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 에만 게양한다. ⑤ · ⑥ (생 략)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청사, 각급 학교</u>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④ <u>군부대</u> ----- -----. ⑤ · ⑥ (현행과 같음)